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Connection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uman Rights and Paris Agreement

박 병 도*
Park, Byungdo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SDGs와 파리협정과의 관계 |
| II. SDGs와 국제법의 연관성 | V. 결론 |
| III. SDGs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 |

SDGs는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SDGs는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SDGs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해당하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담고 있는 현상이며 의제이며 행동계획이다.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원칙과 기준은 SDGs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SDGs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들이 이행해야 할 목표이다. SDGs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인권 규범 및 메커니즘이 SDGs 이행에 있어서 방향 설정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SDGs는 규범적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제 법률 문서들 특히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https://doi.org/10.35148/ilsilr.2022..51.145>

투고일: 2022. 3. 11. / 심사완료일: 2022. 4. 1. / 게재확정일: 2022. 4. 19.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Ph.D.,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

여러 목표와 세부목표가 기존의 국제 협약, 특히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SDGs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SDGs의 핵심적인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SDGs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먼저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SDGs를 국제법의 또 다른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SDGs가 국제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SDGs가 국제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030 의제의 핵심적인 의제인 인권 보호 및 신장, 그리고 환경보호(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둠)와 SDG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확실히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SDGs는 인권과 통합하고, 파리협정과 연계하고 있다.

[주제어] 2030 의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인권, 파리협정,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기반적 접근, 통합원칙

I. 들어가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 대유행으로 각 국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라 함)의 달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¹⁾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²⁾을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³⁾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가 시작되기 2개월 전인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1) 코로나19 대유행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적으로 SDGs 달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015년 SDGs 채택 이후 처음으로 2020년의 세계 평균 SDG 지수 점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Jeffrey D. Sachs/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Grayson Fuller/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이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라 함),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 9.

2) Paris Agreement, 2015년 12월 12일 채택, 2016년 11월 4일 발효.

3)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1992년 5월 9일 채택, 1994년 3월 24일 발효.

Development)⁴⁾(이하 2030 의제 또는 2030 Agenda라 함)를 채택하였다.⁵⁾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지구적 의제인 2030 의제는 201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SDGs라고 한다. SDGs는 인류와 지구에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2030년까지 향후 15년에 걸쳐 이행할 행동의제이다. 국가들은 자신들이 “목표 및 세부목표가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⁶⁾는데 동의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방식에 동의하였다.⁷⁾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SDGs는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인권 원칙과 기준이 SDGs에 전폭적으로 반영되어 있다.⁸⁾

SDGs는 헌장(charter)이며 의제(agenda)이며 행동계획(action plan)이다.⁹⁾ SDGs는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해당하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에 담고 있는 규범이다.¹⁰⁾ SDGs는 빈곤감소, 식량안보, 건강한 삶의 보장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포함하고 있

4)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A Res 70/1, UNGAOR, 70th Sess, UN Doc A/RES/70/1 (2015) (이하 2030 Agenda라 함),

5)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 경제사회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웹사이트의 United Nations, “The 17 Goals” <<https://sdgs.un.org/goals>>, 검색일: 2022.2.11. 참조.

6) 2030 Agenda, Preamble.

7) 정경수/권혜령, 국제인권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05-206쪽.

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엔인권이사회 웹사이트 United Nations, “Abou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Issues/SDGS/Pages/The2030Agenda.aspx>>, 검색일: 2022.2.22. 참조.

9) 2030의제는 SDGs를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 헌장’(a charter for people and planet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며(2030 Agenda, para. 51), ‘사람의, 사람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의제’(an agenda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이고(*ibid.*, para. 52), ‘사람과 지구와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이라고(*ibid.*, Preamble) 정의하고 있다.

10) 각 목표(Goal)는 최소 5개에서 최대 19개의 세부목표(target)를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는 달성해야 할 실제적 목적이고, 세부목표는 목표를 이행하는 수단 또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경제사회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웹사이트의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2030agenda>>, 검색일: 2022.2.10. 참조.

다.¹¹⁾ 2030 의제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들이 이행해야 할 목표이다. 그래서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전세계적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¹²⁾ 이렇듯 SDGs는 여전히 유의미하며 국제사회는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¹³⁾

이 논문은 먼저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SDGs를 국제법의 또 다른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SDGs가 국제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는 국제법이 SDGs에 대해 국제규범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SDGs가 국제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 중의 하나이며 2030 의제의 핵심적인 의제인 인권 보호 및 신장, 그리고 환경보호(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둠)와 SDG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Gs의 핵심적인 주제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SDGs 하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연결점으로 SDGs는 인권보호,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과도 연관성을 맺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SDGs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두 가지 문서 모두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SDGs에 인권을 통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SDGs의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SDGs는 대부분의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11) 목표 및 세부목표 이외에도 2030 의제의 전문, 제3항, 제8항, 제10항, 제19항, 제20항, 제74항에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2) 유엔은 매년 각국의 17개의 SDGs에 대한 이행상황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1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지속가능지수(SDG Index)는 78.6점으로 165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SDG 지수는 17개 목표에 대한 각국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가능한 최악의 결과(0)와 최고의 결과(100) 사이의 국가 위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매우 미흡한 분야는 6개이다. 목표 5의 젠더 평등, 목표 10의 불평등 감소, 목표 13의 기후행동, 목표 14의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 15의 육상생태계 보존, 목표 17의 국제협력 등 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op. cit.*, pp. 9-10 and 277-278).

13) 우리나라도 2021년에 SDGs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5월 30일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P4G의 서울정상회의 ‘지구를 위한 행동’을 개최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가 있으며,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제2차 SDG Moment 고위급회의 개최식에서 연설을 하였고, 이때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도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11월 18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내용이 인권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확실히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SDGs는 인권과 통합하고, 파리협정과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SDGs와 인권의 관계를 고찰한 다음 SDGs와 파리협정과의 관계, 특히 파리협정의 인권 기반적 이행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법상의 법원칙으로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도구로 역할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SDGs와 국제법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한다. 다만 이 논문은 실제로 각국이 SDG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II. SDGs와 국제법의 연관성

1. 국제법 기반 SDGs

SDGs에 포함된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는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SDGs는 규범적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제 법률 문서들¹⁴⁾ 특히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¹⁵⁾¹⁶⁾ 여러 목표와 세부목표가 기존의 국제 협약, 특히 국제인권조약

14) SDGs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ILO 협약, 물에 대한 권리 선언, 발전권 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기후변화협약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SDGs의 세부목표와 국제인권기준을 연계하여 각국의 SDGs이행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SDGs와 관련한 83개의 국제인권조약 및 다자간 환경협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s 지침’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dg.humanrights.dk>>, 검색일: 2022.2.22. 그리고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Instruments overview”, <<http://sdg.humanrights.dk/en/instruments/overview/list>>, 검색일: 2022.2.22. 참조.

15) 2030 의제 제10항은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및 새천년선언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에 기반을 둔다, 이는 유엔 발전권에 관한 선언과 같은 기타 문서들을 고려한다.”(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들에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⁷⁾¹⁸⁾ SDGs가 포함된 2030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을 포함하여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의거하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¹⁹⁾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한 여러 국제법적 문서들에 의해 방향을 잡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이런 측면에 보면 국제법과 SDGs 사이에는 깊은 법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SDGs 자체는 법적 규칙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이다. 그러나 SDGs의 내용 그리고 SDGs가 채택된 과정²¹⁾ 및 문서 형식은 적어도 목표 또는 세부목표의 일부가 연성법(soft law)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미 다양한 국제문서에서 공약(commitments)으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목표와 세부목표는 국제관습법으로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라고 언급하여 준수해야 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9항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및 국제법과 관련한 국제문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보호·증진할 모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19.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We emphasize the responsibilities of all States,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disability or other status.)라고 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 및 국제법을 강조하고 있다(이태리체 저자 추가).

- 16) 예를 들어, 보호 종의 밀렵 및 매대 근절을 위한 세부목표(15.7)는 1973년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의 목적에서 추적할 수 있다.
- 17) “the Agenda is to be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2030 Agenda, para. 18).
- 18) 유엔인권이사회는 “2030 의제의 이행이 국제인권법상의 국가의 의무와 일치해야 한다.”(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must be consistent with a Stat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를 반복하여 채택하였다(예를 들면, A/HRC/37/L.37.(2018), A/HRC/43/L.27(2020)).
- 19)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SDGs와 관련한 결의를 반복하여 채택하였다(예를 들면, A/HRC/37/L.37.(2018), A/HRC/43/L.27(2020)).
- 20) Rakhyun E. Kim, “The Nexu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RECIEL), Volume 25, Issue 1, John Wiley & Sons Ltd, 2016, pp. 15-16.
- 21) SDGs 협상과정에 많은 국가 대표들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기구, NGOs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은 SDGs의 법적 성격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도 볼 수 있다.²²⁾ SDGs는 엄격하게 판단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SDGs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인권 규범 및 메커니즘이 SDGs 이행에 있어서 방향 설정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2. 파편화된 국제법과 다양한 국제제도의 조율 가능성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목표와 세부목표는 국제법의 파편화²⁴⁾되고 구획화된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SDGs가 다양한 목표들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공동의 목적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국제제도를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SDGs는 이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제도에 일관성(coherence)을 부여하는 데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다. SDGs는 각자의 다른 목적을 위해 수립된 기존 국제체제와 기구들을 조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SDGs는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²⁵⁾

SDGs의 비계층적 구조로 인하여 목표 및 세부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목표와 세부목표 간에는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거나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목표와 세부목표가 상호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며, 일부 대상은 상호의존적이거나 서로를 강화하지만 일부는 다른 목표를 제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규범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동등한 우선순위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며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의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 MDGs와 달리 SDGs는 단순히 발전에 관한 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

22) SDGs의 일부 내용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Rakhyun E. Kim, *op. cit.*, p. 11. 참조.

23) 김수진,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8년 제2호, KOICA, 2018, 114쪽.

24)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UNGA Doc. A/CN.4/L.682, 13 April 2006)(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5) Rakhyun E. Kim, *op. cit.*, p. 15.

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간의 조정 측면에서 SDG의 유용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양한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를 조정(orchestration)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각 SDG에는 여러 조정자가 있으며²⁶⁾ SDGs의 핵심 조정자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후원 하에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LPF)²⁷⁾이다. SDGs 조정자의 성공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상호 유익한 목표를 향해 이타적이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도록 국가와 국제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조약 충돌 해결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특별법우선원칙(principle of *lex specialis*)과 후법우선의 원칙²⁸⁾(*lex posterior*)으로는 이러한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표와 세부목표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고 선후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²⁹⁾ 이러한 원칙들이 목표와 세부목표 사이에 규범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SDGs를 이행하면서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와 세부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적 개념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국제재판소에서 통합원칙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

26) 조약 기구, 연락관 그룹(liaison groups), 유엔 기관 및 정부 간 포럼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 많은 조정자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Rakhyun E. Kim, *op. cit.*, pp. 17-20. 참조.

2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은 1992년에 결의되어 199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의 기능을 이어받아 2013년에 첫 포럼이 개최되었다. HLPF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메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 기능은 2030의제에 포함된 SDGs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2016년 유엔총회의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이라는 결의(A/RES/70/299)는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웹사이트 SUSTAINABLEDEVELOPMENT,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검색 일: 2022.2.10. 참조.

2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제3항.

29) C.J. Borgen, “Treaty Conflicts and Normative Fragmentation”, in D.B. Hollis (ed.),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448.

3. 다양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통합하는 도구로서 국제법

국제법은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SDGs를 통합적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SDGs는 자칭 통합적이고 불가분적이라고 선언하고³⁰⁾ 있지만 SDGs 자체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도 있다.³¹⁾ 그렇다면 국제법은 SDGs의 파편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세부목표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SDGs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규범적 틀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³²⁾

기존의 모든 국제적 공약이 새로운 2030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내용이 이미 다양한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SDGs가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및 통합하는 체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SDGs는 체계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조정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법상 통합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³³⁾은 목표와 세부목표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30) 2030 Agenda, Preamble.

31) Måns Nilsson/Robert Costanza, “Overal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ICSU and ISSC(eds.), *Review of Targe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ICSU), 2015, pp. 7-11.

3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의도된 모호성과 포괄성이 SDGs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기본적인 규범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 Bernste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N. Kanie/F. Biermann(eds.), *Governing through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Governance Innov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017, pp. 213-240.).

33) 2002년 국제법협회(ILA)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대한 NewDelhi 선언’(the NewDelhi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통합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합의 원칙은 사회, 경제, 금융, 환경 및 인권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의 상호 의존과 현재 및 미래 인류 세대의 필요의 상호 의존을 반영한다.”(the principle of integration reflects the interdependence of social, economic, finan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spects of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interdependence of the need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human kind).

통합의 원칙은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제법의 필수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어 왔다(Owen McIntyre,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integr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Sobering lessons from EU law”, in Laura Westra/ Prue Taylor/ Agnès Michelot(eds.), *Confronting Ecological and Economic Collapse: Ecological Integrity for Law, Policy and Human Rights*, London: Earthscan from Routledge/ Taylor & Francis, 2013, p. 104.; 통합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국제환경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André Nollkaemper, “Three Conceptions of the Integration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Selected Works of André Nollkaemper*, University of Amsterdam, 2002, pp. 22-32. 참조.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하여 ‘규범적 무정부 상태’(a state of normative anarchy)³⁴⁾를 방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이라는 국제법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통합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법은 목표와 세부목표가 상호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규범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³⁵⁾

4.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원칙과 SDGs

4.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SDGs와 국제법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³⁶⁾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하여³⁷⁾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대중화되고, 점차 이를 반영한 국제법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³⁸⁾³⁹⁾ 환경, 사회 및 경제문제와 관련한 다자간 국제조약에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포함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⁴⁰⁾ 다자간 조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언급은 조약해석,

34) *Gabčíkovo-Nagymaros Project(Hungary v. Slovakia)*, 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Weeramantry, ICJ Reports(1997), p. 90.

35) Rakhyun E. Kim, *op. cit.*, p. 17.

36) 이에 대해서는 Desta Mebratu,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ume 18, Issue 6, 1998, pp. 493-520.

37)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Brundtland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A/42/427, August 4, 1987.

38) 2002 ILA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세계적인 목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이 개념은 조약법과 국제적, 국내적 판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및 국내적 법적 문서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ILA New Delhi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April 2002(UN Doc. A/CONF.199/8, 9 August 2002)).

39) 한 분석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언급은 300개 이상의 협약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중 112개는 다자간 협약이고 약 30개는 보편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0개 이상의 조약이 그 본문 조항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V. Barral,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Nature and Operation of an Evolutive Legal Nor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Issue 2, 2012, p. 377.

40) Christina Voigt,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limate Measures and WTO Law*, Leiden: Martinus Nijhoff, 2009, p. 18; Phili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0-11.

국가 차원의 사회, 경제 및 환경 관련 정책의 결정 그리고 국제재판소 및 국내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¹⁾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학문적 또는 정책적 합의는 없다.⁴²⁾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⁴³⁾ 정리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① 현재 세대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발전(세대 간 형평이라고도 함), ② 지속적인 인간의 삶에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⁴⁴⁾(ecosystem services)를 보존하는 발전, 또는 ③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의 공진화(coevolution)를 촉진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원칙 등으로 인식되어왔다.⁴⁵⁾ 최근 문헌들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⁴⁶⁾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는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⁴⁷⁾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제적 법적 지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그 개념은 이미 다양한 국제재판소와 법정의 여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점 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비국가행위자의 참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의 주도로 채택된 SDGs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1) Centre for Inter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Law(CISDL),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Law?”, A CISDL Concept Paper, Montreal, 2005 : <<https://pdf4pro.com/amp/view/what-is-sustainable-development-law-5210d.html>>, 검색일: 2021, 11. 17.

42) Ulrich Beyerlin, “Different Types of Norm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olicies, Principles and Rules”, in Dan Bodansky/Jutta Brune/ Ellen Hey(ed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443-445.

43)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였다.

44)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 사회가 물, 에너지, 탄소의 순환, 생물의 생명 활동 따위와 같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나 기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을 말한다.

45) Alan Boyle/David Freestone(eds.), *International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8.

46) Susan Baker, *Sustainable Development*, 2nd ed., London, UK: Routledge, 2016.

47) Patrícia Galvão Ferreira, “Did the Paris Agreement Fail to Incorporate Human Rights in Operative Provisions?”, *CIGI Papers*, No. 113,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October 2016, p. 6.

4.2 통합의 원칙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이 통합원칙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재판소에서 통합원칙으로 해석되고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충돌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법적 분쟁은 *Gabčíkovo-Nagymaros 사건*⁴⁸⁾이다. ICJ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제법적 개념으로 언급했다. 실제로 ICJ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인용했다.⁴⁹⁾ Weeramantry 부소장은 별도의견(*Separate Opinion*)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개념 이상’이며 ‘규범적 가치가 있는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⁵⁰⁾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국제공동체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된 현대 국제법의 일부’라고 보았다.⁵¹⁾ 이와 같이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법의 원칙으로 준용될 수 있다.⁵²⁾

*Iron Rhine 사건*에서 상설중재재판소(PCA)도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켜야 하는 이러한 의무를 ‘일반 국제법의 원칙’으로 인정했다.⁵³⁾ PCA는 ‘환경법과 개발법은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고 통합된 개념으로 존재한다’⁵⁴⁾라고 언급, 특히 환경 보호를 개발 과정에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 리우선언 원칙⁴⁵⁾와 관련하여 언급했다. 즉 ‘개발이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의무가 있다.’⁵⁶⁾고 판단했다.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이 … 지속가능한 발전

48) *Gabčíkovo-Nagymaros Project(Hungary v. Slovakia)*, ICJ Reports(1997), p. 6.

49) *Ibid.*, p. 78.

50) *Ibid.*, p. 85.

51) *Ibid.*, p. 95.

52) Makane Moise Mben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 Conversation with Judge Weeramantry”, in Serena Firlati/Makane Moise Mbengue/Brian McGarry, *Gabčíkovo-Nagymaros Judgment and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Leiden: Brill Nijhoff, 2020. p. 185.

53)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rbitration Regarding the Iron Rhine Railway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ward, 24 May 2005(‘*Iron Rhine Arbitration*’), p. 67.

54) *Ibid.*

55) 리우선언 원칙4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는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 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56) *Iron Rhine Arbitration*, *op. cit.*, p. 67.

의 본질'임을 재확인했다.⁵⁷⁾ 문제의 특정 상황에서 ICJ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물의 사용과 하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인정했다.⁵⁸⁾ ICJ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반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⁵⁹⁾

위 세 가지 사건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를 통합하는 도구로서 국제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은 발전의 필요성을 환경 보호와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자세한 설명 중 하나는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위에서 언급한 *Weeramantry* 판사의 별도의견에 포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발전의 권리와 환경 보호 권리를 모두 국제법에 따라 동등하게 확립된 권리로 인정한다. 그것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발전의 권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⁶⁰⁾ 다시 말해서, 발전은 그것이 발생해야 하는 환경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추구될 수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발전은 환경 보호의 합리적인 요구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추진될 수 있다.⁶¹⁾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순전히 환경적 가치 추구에 자동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권리와 이익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컨대,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은 통합원칙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DGs와 국제법 사이의 자연스러운 조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약들 속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해석 원칙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모든 관련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⁶²⁾ ICJ는 국제조

57)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s(2010), p. 75.

58) *Ibid.*, p. 64.

59) 그러나 *Cañado Trindade* 판사는 별도의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판명되었음을 강조했다(*Ibid.*, p. 177).

60) *Gabčíkovo-Nagymaros, op. cit.*, p. 92.

61) *Ibid.*

6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 (c).

약을 해석하는 경우, 해석 당시 통용되는 전체 법률 체계와 조화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⁶³⁾ 따라서 SDGs를 포함하고 있는 2030 의제는 국제인권조약들, 파리협정 등과 같은 특정의 국제법적 문서들(경성법적 성격을 지니든 연성법적 성격을 지니든 관계없이)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또한 전체로서 국제법과 분리하여 이해해서도 안 된다. SDGs의 국제법적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SDGs를 해석할 때 국제인권조약, 국제환경협정(특히 파리협정) 등은 ‘국제법의 관련 규칙’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II. SDGs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1. 의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leaving no one behind),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2030 의제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SDGs의 17개 목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 대부분에서 인권을 다루고 있다. SDGs는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⁶⁴⁾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30 의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2030 의제는 보편적 인권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2030 의제는 기존의 국제인권체제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등도 인권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SDGs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인권 기반적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의 적용은 필수적이다.⁶⁵⁾

63)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1971), p. 16. para. 53.

64) 이성훈,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인권 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4호, KOICA, 2017, 6쪽.

65) SDGs의 인권적 전망에 대해서는 Thomas Pogge/Mitu Sengupta, “Ass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Volume 32, Issue

2. SDGs 채택과정에서 인권 논의와 그 발전

2000년에 세계 지도자들이 특별회의에서 서명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⁶⁶⁾에 분명히 국제인권 골격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⁶⁷⁾ 그때, 149명의 세계 지도자들은 8가지 의제⁶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발전목표 또는 MDGs라고도 함)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SDGs는 2000년 UN에서 채택되어 2015년까지 달성할 8가지 목표를 담고 있는 MDGs를 대체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8개의 MDGs 중 어느 것도 인권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며 일부 논평자들은 MDGs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인권을 완전히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⁶⁹⁾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MDGs의 공식화에 대한 인권 중심적 접근의 부재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결과, MDGs 이행 현황을 담고 있는 국가 보고서들에는 인권 용어와 개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⁷⁰⁾ MDGs와 인권 체계 사이의 통합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 Alston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한다: “MDGs와 인권 규범은 밤에 서로를 지나쳐 향해하는 선박들로, 서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거의 없다.”⁷¹⁾

MDGs 이후 국제사회가 이행할 포스트 2015 발전 목표를 지지한 세력들은 SDGs가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²⁾ SDGs의 출발점인 2012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2, 2016, pp. 83-97.

66)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UN Doc A/RES/55/2.

67) Philip Alston,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HRQ)*, Vol. 27, No. 3, 2005, p. 757.

68) MDGs의 8가지 의제(agenda)는 (1)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reduce child mortality; (5)improve maternal health; (6)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8)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이다.

69) Ellen Dorsey/Mayra Gomez/Bret Thiele/Paul Nelson, “Falling Short of Our Goals: Transform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to Millennium Development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 28, No. 4, 2010, p. 516.

70) Philip Alston, *op. cit.*, p. 792.

71) *Ibid.*, p. 825.

72) John H. Knox, “Human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4, No. 3, 2015, p. 524.

UN 회의는 그 성과(결과) 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모든 국가가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⁷³⁾ 이듬해 7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의 핵심(필수 구성 요소)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새천년선언에 담겨있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과 보편적으로 수락된 가치 및 원칙에 확고히 자리 잡은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⁷⁴⁾

SDGs의 발전을 위해 2012년 UN회의의 결정에 의해 구성된 UN Working Group이 2014년 8월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⁷⁵⁾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포함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SDGs의 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이것은 SDGs가 인권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면위원회(AI) 등으로 이루어진 인권단체 등에서 밝혔듯이 목표와 세부목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기존의 인권 기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SDGs가 인권 규범을 보다 명시적으로 통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협상가들에게 모든 목표와 세부 목표를 관련 인권 기준에 맞추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목표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⁷⁶⁾ 10개 국제인권조약기구⁷⁷⁾ 의장들은 표현, 결사 및 평화

7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June 20-22, 2012, The Future We Want, paras. 8-9, U.N. Doc. A/CONF.216/L.1 (June 19, 2012) (“We also reaffirm respect for al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the right to food ... We emphasize the responsibilities of all States,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disability or other status.”).

74) U.N. Secretary-General,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68/202 (July 26, 2013).

75)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8th Sess., UN Doc. A/68/970 (Aug. 12, 2014).

76) The Post-2015 Human Rights Caucus, Open Letter, The Post-2015 Agenda Won't Deliver Without Human Rights at the Core,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Sept. 29, 2014 <<https://www.cesr.org/post-2015-agenda-wont-deliver-without-human-rights-core/>>, 검색일: 2022.2.7.

77)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mmittee Against Tortur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이들

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인권에 대한 일관된 연계 및 언급을 유지하고 실제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⁷⁸⁾ UN Open Working Group은 2014년 8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사무총장은 SDGs를 위한 인권 기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마침내 2015년 9월, 세계 지도자들은 이전에 따로따로 향해했던 발전 화물과 인권 화물의 상당 부분을 한 배에 싣고 향해하기로 결정하였다.

2030 의제가 채택될 당시 유엔인권조약기구는 유엔총회에서 SDGs가 세계인권선언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SDGs가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유엔인권이사회 (UNHRC)도 SDGs와 관련한 결의를 여러 차례 채택한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7월 ‘모든 인권향유에 대한 발전의 기여’라는 제목의 결의에서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는 2030 의제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⁸⁰⁾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는 2020년 제43차 회기에서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2030 의제의 이행’이라는 결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UN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유엔 밀레니엄 선언 및 2005년 세계정상회담 결과물에 근거한다는 점 그리고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2030 의제의 이행이 상호 연관되고 상호 강화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2030 의제의 이행에서 통합적 접근방식을 권고하였다.⁸¹⁾

3. SDGs에 포함된 주요한 인권

2030 의제는 전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⁸²⁾에서 인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10개의 국제인권조약기구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United Nations, “INSTRUMENTS & MECHANISMS”, <<https://www.ohchr.org/EN/HRBodies/Pages/HumanRightsBodies.aspx>>, 검색일: 2022.2.22. 참조.

78) Joint Statement of the Chairperson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Jan. 18, 2015)(이하 Joint Statement라고 함),

79) 정경수/권혜령, 앞의 책, 205쪽.

80)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to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HRC/RES/41/19(2019).

81)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HRC/43/L.27(2020).

있다. 2030 의제는 전문에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 세 가지 차원이 통합적이고 불가분적이며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데,⁸³⁾ 또한 SDGs가 성 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추구한다는 데,⁸⁴⁾ 그리고 빈곤 퇴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데⁸⁵⁾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SDGs는 그때까지 과도하게 분열되어 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관한 국가관행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SDGs는 빈곤 퇴치(목표1),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및 영양 상태 개선(목표2), 건강 보장과 안녕 증진(목표3), 양질의 교육 보장(목표4) 및 물 접근 개선 및 위생(목표6)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성평등(목표5), 불평등 완화(목표10), 민주주의와 법치, 알권리, 사법에 대한 접근권, 비차별(목표16)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의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새로운 발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들이 SDGs에서 개념화되는 방식은 분명히 전체적(holistic)이며 많은 측면에서 MDGs보다 기존의 국제인권 조항에 더 잘 부합한다.⁸⁶⁾

여기서는 SDGs와 인권의 관계, 특히 SDGs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인권 규범을 통합하고 있다는 관점⁸⁷⁾에서, SDGs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인권들, 특히 환경과 관련한 인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환경,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에 대한 목표(목표12, 13, 14, 15) 또한 인권 향유와 연결되어 있다.

82) 2030 의제의 제3항, 제8항, 제10항, 제19항, 제20항, 제29항, 제35항, 제67항, 제74항 등에서 인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83) 2030 Agenda, Preamble. “They[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169 targets] are integrated and indivisible and balance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84) *Ibid.* “They[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169 targets] seek to realize the human rights of all and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85) *Ibid.* “We recognize that eradicating poverty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including extreme poverty, is the greatest global challenge and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86) Steven L.B. Jensen/Allison Corkery/Kate Donald, *Realizing Rights Throug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riefing Paper,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5, p. 2.

87)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Weeramantry 판사는 별도의견에서 환경 보호는 ‘건강권, 생명권 등 수많은 인권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다(*Gabčíkovo-Nagymaros*, *op. cit.*, p. 91).

3.1 평등과 비차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SDGs의 핵심 우선순위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SDGs의 기본 정신은 인권의 기본원칙인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⁸⁾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목표10은 소득 불평등과 모든 형태의 차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 다른 중요한 인권 규범을 다룬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목표들에도 평등하고 보편적인 접근(예: 깨끗한 물과 위생, 저렴한 에너지, 경제 기회에 대한) 및 성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핵심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협상 당시부터 SDGs가 평등과 비차별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⁸⁹⁾ 예를 들어, 10대 국제인권조약기구 의장들은 여성, 어린이, 토착민, 이민자, 노인, 장애인, 빈곤층을 포함하여 소외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 이전의 발전 노력과 대조적으로 세부목표에 비차별을 포함하는 것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발전 의제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논평하였다.⁹⁰⁾

그런데 매우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평등과 비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예를 들어, 목표10은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보다는 환경 불평등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비차별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또한 많은 세부목표도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⁹¹⁾ 예를 들어, 세부목표(16.b)는 “지속가

88) 정경수/권혜령, 앞의 책, 205쪽.

89) Joint Statement, *op. cit.*, p.1(“The emphasis placed by the Open-Working Group and the Secretary-General’s reports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cluding two dedicated equality goals on gender equality and equality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s crucial. Previous development efforts failed to produce sufficient improvements in the plight of the marginalized, disempowered and excluded, including women, children, minorities, indigenous peoples, migrants, older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oor. Even where overall progress was positive, inequalities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have dramatically increased between social groups, countries and between regions. The inclusion of non-discrimination and social cohesion targets is, therefore, an important step towards a development agenda that leaves no-one behind.”)

90) *Ibid.*, p. 1.

91) SDGs의 인권적 측면에 대한 비판은 Inga T. Winkler/Carmel William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early Re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ume 21, Issue 8, 2017, pp. 1023-1028.

능한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인 법률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하는 것”(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차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서 비차별적인 법률 및 정책의 촉진 및 집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였다면 더 유용할 것이다.

SDGs는 성 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목표5는 “성 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목표의 첫 번째 세부목표(5.1)는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목표5의 언어는 국제인권규범과의 일관성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 세부목표(5.a)는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목표는 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다. 여성이 자신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포함한 기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환경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⁹²⁾

SDGs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의 맥락에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환경적 위협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SDGs는 또한 빈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목표1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다. 세부목표(1.5)는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극단적 현상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재난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특히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포함된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세부목표(1.4)는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 계층이 경제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본 서비스,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소유권, 상속, 자연 자원, 적절한 신기술 및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⁹³⁾ 모든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 서비스와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함으로써 국가는 권리 중심의 관점에서 빈곤 퇴치에 접근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른 세부목표에 비해 권리 언어가 더욱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92) John H. Knox, *op. cit.*, pp. 534-535.

93) *Ibid.*

3.2 실체적 권리

SDGs는 인권과 관련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및 세부목표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환경 보호와 관련한 인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른바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17은 제3세대 인권(third generation human rights)으로 일컫는 발전권 및 국제연대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목표와 세부목표 중에 포함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인권을 살펴본다.

3.2.1 건강권

건강 관련 목표는 또한 인권이 SDGs에 더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권과 관련한 내용은 목표3⁹⁴⁾에 언급되어 있다. 목표3은 “모든 연령층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품질이 뛰어나며 저렴한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녕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는 건강을 권리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세부목표 3.9는 환경 보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30년까지 유해 화학 물질,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의 수를 실질적으로 줄인다.”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문제는 확실히 시급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엄격한 세부목표가 의미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

3.2.2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목표6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목표에 따른 대부분의 세부목표는 환경과 관련한 인권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6.3)은 “2030년까지 오염을 줄이고, 투기(텀핑)를 제거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수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질을 개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94)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95)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3.2.3 안전한 거주권

목표11은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⁹⁶⁾ 인간 거주지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명백하며 몇 가지 세부목표는 환경과 더욱 관련이 있다. 여기서도 문제는 이 언어의 대부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목표와 관련된 많은 국제 환경 및 보전 협정이 있지만 세부목표에는 특정 조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3.2.4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국가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에게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 목표16 하의 세부목표에는 이러한 의무와 관련된 일부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16.1)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모든 곳에서 현저히 감소시킬 것”⁹⁷⁾을 명시하고 있다. 이 목표도 가치가 있지만 세부목표 및 지표와 환경 및 인권활동가들과 연결되면 더 유용할 것이다. 국제인권조약기구 의장들은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을 명시한 세부목표(16.1 0)⁹⁸⁾가 “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⁹⁹⁾

3.2.5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권

목표13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해 긴급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¹⁰⁰⁾ 적어도 2009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 기후변화가 생명, 건강, 음식, 물 등과 관련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보고서¹⁰¹⁾를 발표한 이래로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인권의 향유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음이

96)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97) target 16.1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98) target 16.10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99) Joint Statement, *op. cit.*, p. 1.(In this context, the reference to fundamental freedoms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licitly referring to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Goal 16, target 16.10))

100)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101)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분명하다.¹⁰²⁾ 그런데 목표와 관련된 세부목표는 모두 매우 모호하다. 파리협정과 SDGs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장(IV)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3.3 절차적 권리

SDGs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환경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 절차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목표16에는 사법에 대한 접근권,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차별적 법과 정책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목표16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기본적 자유 보호, 의사결정 참여, 차별금지 법률 및 정책, 정의에 대한 접근 등의 중요한 인권 기준 및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약속의 포함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3.3.1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두 가지 세부목표가 특히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패턴) 보장”이라는 목표12¹⁰³⁾에 따른 것이다. 세부목표(12.8)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 방식에 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⁰⁴⁾

두 번째 관련 세부목표는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법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U.N. Doc. A/HRC/10/61 (Jan. 15, 2009).

102) John H. Knox, “Linking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at the United Nations”,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33, 2009, p. 477.

103)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04) 세부목표(12.8)와는 대조적으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10은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각 개인은 위험 물질 및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10에서도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위험 물질 및 해당 지역 사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훨씬 더 구체적인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는 목표16¹⁰⁵⁾ 속에 포함되어 있다. 목표16은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와 세부 목표에 대해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제안에 호응한 것이다. 세부목표(16.10)는 “국내 법률 및 국제 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는 세부목표(12.8)보다 더 구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우선언 원칙10¹⁰⁶⁾에서와 같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3.3.2 환경의사결정과정에 대중의 참여권

환경의사결정과정에 대중의 참여권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세부목표는 목표16 안에 있다. 세부목표(16.7)에는 “모든 수준에서 반응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의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것”¹⁰⁷⁾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참여 수준을 추상적으로 남겨두기보다는 각 개인이 그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세부목표가 인권법상 자국 정부에 그리고 공무 수행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기존 의무에 더 부합하게 되고, “각 개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리우선언 원칙 10을 실현하는 데도 더 가까이 다루게 될 것이다.

3.3.3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권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도 또한 목표16이다. 세부목표 (16.3)는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법치주의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법예의 접근을 보장한다.”¹⁰⁸⁾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평가는 다른 세부목표들의 평가와 대체로 동일하다. 즉 목표 자체는 가치가 있지만 직접 실현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105)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106) 리우선언 원칙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이태리체 저자 추가).

107) target 16.7 Ensure respons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108) target 16.3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모호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SDGs와 인권의 연계의 강화

SDGs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목표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인권과 환경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훈계하고 권고하려면 구호나 제스처 이상으로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SDGs에 인권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를 인권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인권 기반적 접근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SDGs와 파리협정과의 관계

1. 의의

SDGs가 채택된 직후인 2015년 12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SDGs는 파리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동인 중의 하나로 본다.¹⁰⁹⁾ 파리협정을 채택한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에는 기후체제와 SDGs의 연관성을 명시하면서 2030 의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¹¹⁰⁾ 이것은 파리협정의 협상 당사국들이 기후체제와 SDGs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¹⁾ 파리협정은 SDGs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국이 각자의 행동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맥락이 제시된 여러 조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복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리협정은 SDGs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¹²⁾ SDGs와 기후에 관한 파리협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국제적 합의이다.¹¹³⁾

109) Daniel Klein/María Pía Carazo/Meinhard Doelle/Jane Bulmer/Andrew Higham(eds.),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25.

110) Decision I/CP.21, Preamble, para. 4.

111) Daniel Klein/María Pía Carazo/Meinhard Doelle/Jane Bulmer/Andrew Higham(eds.), *op. cit.*, p. 402.

112) 파리협정과 SDGs의 관계에 대해서는 Adis Dzebo/Hannah Janetsche/Clara Brandi, *Connections Between the Paris Agreement and the 2030 Agenda*,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 2019, pp. 4-31.

SDGs에 관한 협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목표에 기후변화 고려사항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 두 접근을 결합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목표13으로 정해졌고, 다양한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에 기후 고려사항이 반영되면서¹¹⁴⁾ 발전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처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¹¹⁵⁾ SDGs의 혁신 중 하나는 목표13을 포함하여 세계 기후 체제와의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었다.¹¹⁶⁾

17개의 목표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목표13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여 파리협정 이전 UNFCCC 체제 하에서 국가들이 동의한 일부 약속을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17개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의제의 여러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의제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고서는 2030 의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¹¹⁷⁾ 이와 같이 모든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관련한 목표7 또는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에 관한 목표12의 달성을 가속화하지 않고는 기후 행동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 솔루션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표8의 재생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또는 목표9에 따른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과 같은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¹¹⁸⁾

113) Norichika Kanie/David Griggs/Oran Young/Steve Waddell/Paul Shrivastava/Peter M. Haas/Wendy Broadgate/Owen Gafney/Csaba Körösi, “Rules to Goals: Emergence of New Governance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Science*, Vol. 14, 2019, p. 1745.

114) 예를 들면, 세부목표(13.2)는 당사국의 국가전략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5) Daniel Klein/María Pía Carazo/Meinhard Doelle/Jane Bulmer/Andrew Higham(eds.), *op. cit.* p. 408.

116) *Ibid.*, p. 14.

117) UN News, “COP26: SDG or NDC? Our guide to the language you need to know”, <<https://news.un.org/en/story/2021/10/1104022>>, 검색일: 2021.11.10.

118)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https://www.un.org/en/climatechange/17-goals-to-transform-our-world>>, 검색일: 2021.11.10.

2. 지속가능한 발전과 파리협정 그리고 인권의 연계

파리협정을 살펴보면 인권 관련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주요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⁹⁾ 인권 규범이 SDGs에 상당한 수준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권이 파리협정의 본문 조항에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파리협정의 여러 본문 조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파리협정에 통합되어 있다는 근거로 간주될 수가 있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고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많은 국제협약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 파리협정은 본문 조항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적어도 15번 이상의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¹²⁰⁾ 파리협정은 제2조(협정의 목적), 제4조(감축), 제6조(협력적 접근) 및 제7조(적응), 제8조(손실과 피해)를 비롯하여 여러 조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로 유지하고, 그리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를 포함하여 파리협정의 목적을 명시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목적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볼 수 있는 제2조 제1항에는 파리협정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 협정은, 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구절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라는 문구는 인권과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하는데, 특히 목표16의 세부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의사결정에 참여, 차별금지과 관련한 법 및 정책, 사법에 대한 접근 및 기타 목표들에 포함된 기타 인권 요소를 포함하도록 읽어야 한다.¹²¹⁾

당사국은 또한 제4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포함하여 국가의 개별적인 자체 결정 감축 기여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제1항에서 “형평에 기초하고

119) 파리협정의 인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박병도, “파리협정과 인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55호, 국제법평론회, 2020, 16-19쪽 참조.

120) Patrícia Galvão Ferreira, *op. cit.*, p. 9.

121) *Ibid.*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제2조에 규정된 장기적인 기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무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인권적 요소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자발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적 메커니즘(예를 들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제6조 제2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등에서 환경적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관한 특별 작업반(ADP)은 파리협정의 본문 조항에 포함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CDM을 대체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제6조에 따른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법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파리협정 상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부합하는 인권 보호 장치와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7조에서는 적응 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2조에서 언급된 기온 목표의 맥락에서 적절한 적응 대응(adaptation response)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이 라는 전지구적 적응목표를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기후 관련 정책 및 법을 수립할 때 인권적 요소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²²⁾

파리협정 제8조 제1항은 손실 및 피해 방지와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손실 및 피해와 관련된 접근 방식은 극심한 기후 현상 또는 점진적 변화(extreme weather events or slow onset events)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및 지역 사회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¹²³⁾ 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는 직접적인 주의를 요하는 현실임을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손실 및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손실 및 피해의 위험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파리협정의 다른 조항¹²⁴⁾은 물론이고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 의제, 즉 SDGs와도 연결시키고 있다.¹²⁵⁾

122) 파리협정 제7조 제5항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대중의 참여권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3) 박병도, 앞의 논문, 17쪽.

124) 예를 들어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파리협정의 모든 조항의 이행은 SDGs에 접목되어 있는 인권 기반적 접근방법이 반영되어야 한다. 인권을 SDGs와 파리협정의 주요 조항에 통합하는 것은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영향을 미친다. SDGs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전략 목표에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파리협정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국가결정기여(NDC)를 준비하고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NDC를 수립할 때 SDGs의 이행과 연계하여야 하며 SDGs의 이행 측면에서도 NDC의 이행이 주요 지표로 평가될 것이다. 각국은 중앙정부 및 비국가 행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범국가적으로 논의를 거쳐 NDC를 결정한다. 이때 당사국은 NDC에서 제시된 조치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SDGs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¹²⁶⁾ 동시에 각국은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기후 목표를 포함하여 우선순위 SDG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NDC의 기초가 될 기본 틀은 인권적 고려 요소와 지속가능성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

3. SDGs와 파리협정의 시너지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협정의 이행은 SDGS 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SDGs는 기후변화와 토지 황폐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세부목표 15.3). 회복력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면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회복력 구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파리협정 제7조 제9항(e)호와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 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부목표(1.5)의 이행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파리협정 제5조는 세부목표(15.2)와 연관성이 높다. 모든 생태계의 건전성(integrity of all ecosystem)의 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파리협정은 전문의 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목표14 및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세부목표

125) Daniel Klein/Maria Pia Carazo/Meinhard Doelle/Jane Bulmer/Andrew Higham(eds.), *op. cit.*, p. 228.

126) *Ibid.*, pp. 403-404.

(14.3)는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리협정과 SDGs는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¹²⁷⁾

파리협정과 SDGs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 당사국, 국제기구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NGOs, 연구자, 실무자 등)은 두 문서 간 시너지효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지침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¹²⁸⁾

4. 소결

파리협정은 전문 및 여러 부문 조항에 직접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권을 통합하고 있다. SDGs 하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핵심적인 인권 요소를 포함한다는 데 국가들이 동의한 것 바와 같이, 파리협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러 곳에서 언급한 것은 인권적 차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명히, UNFCCC와 교토의정서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언급하였기에, 파리협정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요컨대, SDGs가 권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규범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2020년부터 기후 행동을 이끌 파리협정에서 인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다.¹²⁹⁾

V. 결 론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를 비롯한 오늘날의 인권 위기는 SDGs보다 더 긴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전지구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부정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기에 두 영역이 통합적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권의 장(場)으로 옮겨져 사회문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를 통합하여 해결하는 도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발전과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통합하려

127) *Ibid.*, p. 409.

128) 2030 의제와 파리협정 간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ibid.*, p. 409. Box 23.1 참조.

129) Patrícia Galvão Ferreira, *op. cit.*, p. 9.

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SDGs는 인권 기반적 접근을 통하여 더욱 그 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SDGs에는 가치 있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세부목표에는 인권이나 환경 보호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고 집중된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SDGs는 기존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약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내용을 목표와 세부목표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 특히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문제를 인권과 연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2030 의제의 인권에 대한 언급, 인권 언어를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많은 세부목표들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제 과제는 국제기구, NGO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인권 차원에서 SDGs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각국 정부가 특히 가장 차별받고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과 취약한 공동체(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SDGs는 지구를 보호하면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빈곤국가, 부유한 국가, 중간 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행동을 촉구한다. SDGs는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이 경제성장을 구축하고, 교육, 건강, 사회 보호 및 직업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환경 보호를 다루는 전략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차질이지만 파리협정과 함께 SDGs는 ‘더 나은 발전’(building forward better)을 위한 올바른 나침반을 제공하는 역할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SDGs가 국제사회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리협정의 이행 및 진보 과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인권을 통합하는 관행이 확고한 관행으로 나타날 것이며, 파리협정 상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해석 지침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이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 규정상 ‘관행’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국제법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Bernstein, S.,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N. Kanie and F. Biermann(eds.), *Governing through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Governance Innov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017.
- Beyerlin, Ulrich, “Different Types of Norm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olicies, Principles and Rules” in Dan Bodansky/Jutta Bruneel/ Ellen Hey(ed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Borgen, C.J., “Treaty Conflicts and Normative Fragmentation”, in D.B. Hollis (ed.),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Boyle, Alan/David Freestone(eds.), *International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Dzebo, Adis/Hannah Janetsche/Clara Brandi, *Connections Between the Paris Agreement and the 2030 Agenda*,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 2019.
- Jensen, Steven L.B./Allison Corkery/Kate Donald, *Realizing Rights Throug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riefing Paper,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5.
- Klein, Daniel/María Pía Carazo/Meinhard Doelle/Jane Bulmer/Andrew Higham(eds.),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Mbengue, Makane Mois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a Conversation with Judge Weeramantry”, in Serena Firlati/Makane Moise Mbengue/Brian McGarry, *Gabčíkovo-Nagymaros Judgment and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Leiden: Brill Nijhoff, 2020.
- McIntyre, Owen,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integr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Sobering lessons from EU law” in Laura Westra/ Prue Taylor/Agnès Michelot(eds.), *Confronting Ecological and Economic Collapse: Ecological Integrity for Law, Policy*

- and Human Rights*, London: Earthscan from Routledge/ Taylor & Francis, 2013.
- Nilsson, Måns/Robert Costanza, “Overal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ICSU and ISSC(eds.), *Review of Targe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ICSU). 2015.
- Nollkaemper, André, “Three Conceptions of the Integration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Selected Works of André Nollkaemper*, University of Amsterdam, 2002.
- Sachs, Jeffrey D./Christian Kroll/Guillaume Lafortune/Grayson Fuller/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Sands, Philip,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Voigt, Christina,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limate Measures and WTO Law*, Leiden: Martinus Nijhoff, 2009.

2. 학술지

- 김수진,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8년 제2호, KOICA, 2018, 109-170쪽.
- 박병도, “파리협정과 인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55호, 국제법평론회, 2020, 1-24쪽.
- 이성훈,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인권 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4호, KOICA, 2017, 3-38쪽.
- Alston, Philip,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HRQ)*, Vol.27, No.3, 2005, pp. 755-829.
- Barral, V.,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Nature and Operation of an Evolutive Legal Nor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Issue 2, 2012, pp. 377-400.
- Dorsey, Ellen/Mayra Gomez/Bret Thiele/Paul Nelson, “Falling Short of Our Goals:

- Transform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to Millennium Development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 28, No.4, 2010, pp. 516-522.
- Ferreira, Patrícia Galvão, “Did the Paris Agreement Fail to Incorporate Human Rights in Operative Provisions?”, *CIGI Papers*, No.113,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October 2016, pp. 1-12.
- Kanie, Norichika/David Griggs/Oran Young/Steve Waddell/Paul Shrivastava/ Peter M. Haas/Wendy Broadgate/Owen Gafney/Csaba Kőrösi, “Rules to Goals: Emergence of New Governance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Science*, Vol.14, 2019, pp. 1745-1749.
- Kim, Rakhyun E., “The Nexu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RECIEL)*, Volume 25, Issue 1, John Wiley & Sons Ltd., 2016, pp. 15-26.
- Knox, John H., “Human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4 No. 3, 2015, pp. 517-536.
- Mebratu, Desta,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umn 18, Issue 6, 1998, pp. 493-520.
- Pogge, Thomas/Mitu Sengupta, “Ass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Volume 32, Issue 2, 2016, pp. 83-97.
- Winkler, Inga T./Carmel William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early Re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ume 21, Issue 8, 2017, pp. 1023-1028.

3. 국제판례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197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Hungary v. Slovakia), Judgement, ICJ Reports(1997)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rbitration Regarding the Iron Rhine Railway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ward, 24 May 2005.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ement, ICJ Reports(2010)

4. 국제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A Res 70/1,
 UNGAOR, 70th Sess, UN Doc A/RES/70/1 (2015).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UNGA Doc. A/CN.4/L.682, 13 April 2006)(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 Secretary-General,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68/202 (July
 26, 201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June 20-22,
 2012, *The Future We Want*, paras. 8-9, U.N. Doc. A/CONF.216/L.1 (June 19, 2012)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8th Sess., UN Doc. A/68/970 (Aug. 12, 2014).

5.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A/HRC/37/L.37.(2018)

A/HRC/RES/41/19(2019)

A/HRC/43/L.27(2020)

6. 보고서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U.N. Doc. A/HRC/10/61 (Jan. 15, 2009).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A/42/427, August 4, 1987.

세계국제법협회(ILA), New Delhi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April 2002(UN Doc. A/CONF.199/8, 9 August 2002)
Joint Statement of the Chairperson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Jan. 18, 2015.

7. 웹자료 및 웹사이트

유엔 경제사회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HE 17 GOALS”,
<<https://sdgs.un.org>>, 검색일: 2022.2.11.

유엔인권이사회 웹사이트의 SDGs 자료 United Nations, “Abou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Issues/SDGS/Pages/The2030Agenda.aspx>>, 검색일: 2022. 2. 2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이트 United Nations, “INSTRUMENTS & MECHANISMS”,
<<https://www.ohchr.org/EN/HRBodies/Pages/HumanRightsBodies.aspx>>, 검색일:
2022. 2. 22.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SUSTAINABLE DEVELOPMENT,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검색일: 2022.2.22.

덴마크 인권연구소와 ‘SDGs 지침’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dg.humanrights.dk>>, 2022.2.22.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Instruments overview”,
<<http://sdg.humanrights.dk/en/instruments/overview/list>>, 검색일: 2022.2.22.

[Abstract]

Connection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uman Rights and Paris Agreement

Park, Byungdo*

The SDGs pursu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cluding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all women and girls.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DGs offer critical opportunities to further advanc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everywhe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SDGs are a charter, agenda, and action plan that contain universal human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and social issue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ommon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e variou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now strongly reflected in the SDGs. Since the SDGs are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echanisms can serve as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e SDGs were not created in the absence of a normative vacuum, but are based on the commitments made in a number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particular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Several goals and targets have been drawn from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DG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make it clear that they “must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Here, there is a need for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SD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ed a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positioned as a key concept 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SDGs, and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 Professor,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And in order to show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agendas of the 2030 Agend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with a focus here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xus between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certainly contains a human rights component.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re integrated with human rights and linked with the Paris Agreement.

[Key Words] 2030 Agend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uman Rights, Paris Agre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Human Rights based Approach(HRBA), principle of integration